		•생산적 금융				
금융위원회	보도	11.21.(수) 14:00 이후	보도	배포	2018.11.21.(수)	•포용적 금융
책 임 자	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 윤 상 기(02-2100-2910)		담 당 자		이 원 재 사무관 (02-2100-2914)	

# 제 목: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

## 1.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추진 배경

- □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에서 **금융위는 5년**마다 예보채상환 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**자산・부채를 실사**하고
  -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**채무 변경 등의 조치**\*를 하도록 규정
    - \* 동 조치를 취할 때 정부·금융기관간 분담비율(49:20)을 고려하도록 노력
  - '02년 상환대책이 회수규모,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만큼 주기적으로 상환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려는 취지

## 2.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주요 내용

- ① **공적자금 관련 기금 실사 결과**(향후 상환부담규모 추정)
  - □ '17년말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보채상환기금\*의 **순자산** 부족액은 총 48.6조원으로 추정('02년현가 27조원)
    - \*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'13.2.22일 청산됨
    - **공적자금상환**기금은 자산 324억원, 부채 47.8조원<sup>\*</sup>으로 **순자산** 부족분은 47.7조원
      - \* 상환계획상의 '17년말 부채잔액 51조원 대비 초과상환 중
    -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자산 8.9조원, 부채 9.8조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0.9조원

## ② 총 상환부담(기부담 + 향후부담) 규모 추정

- □ (총 상환부담) '17년말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는 '02년 상환 대책상 69조원보다 10.9조원 감소한 <u>58.1조원('02년현가)</u>로 추정
  - (既부담) '03~'17년까지 재정의 既부담액 20조원과 금융권의 既부담액 11.1조원을 합산한 금액 31.1조원('02년현가)
  - (향후 부담) '17년말 기준 '02년 상환대책 당시 69조원에서 42조원 감소한 27조원('02년현가)로 추정

(단위: 조원, '02년현가)

구 분	'02년 상환대책(A)	'17년 재계산(B)	감소규모(A-B)
기 부담	_	31.1	△31.1
향후 부담	69조원	27.0	42.0
총 부담	69조원	58.1	10.9

'02년 상환대책시에 비해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회수증가,
보유자산가치 상승, 이자비용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

## ③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 추정

- □ 총 상환부담 58.1조원에 대하여 '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 (49:20)을 가정할 경우 재정과 금융권의 분담금액은 각각 41.2조원, 16.9조원('02년현가)으로 추정
  - '03년~'17년간 既부담분을 제외할 경우, 향후 재정과 금융권은각각 21.2조원, 5.8조원 부담

(단위 : 조원, '02년현가)

구 분		재 정	금융권	합계
'18년 정기 재계산	기 부담(A)	20.0	11.1	31.1
	향후 부담(B)	21.2	5.8	27.0
	총 부담(A+B)	41.2	16.9	58.1
'02년 상환대책		49.0	20.0	69.0

#### 4 재정과 금융권 상환부담 능력 평가

- □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
  - '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(49:20)을 가정할 경우
  - 정부는 향후 10년간('18~'27년) 21.2조원('02년현가)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2.12조원('02년현가) 지원 필요
  - 금융권 특별기여금은 부보예금의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9.5~10.6조원('02년현가) 부담 가능
    - \* 예금자보호법 부칙<제6807호>제10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,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,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 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.

## 3. 향후 계획

- □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 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\* 한도 증액 등의 조치\*\*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  - \* (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제2조 제2호) 현재 법령상의 "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무"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하여 상환한 예보채 상환기금 채권 45.7조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3.3조원을 의미
  - \*\* (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제2항)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
- □ 향후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**국민 부담을 최소화** 하도록 노력

- 아울러,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완료 이후 예상되는 예금보험 기금채권상환기금 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안 검토
-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재정과 금융권간 **공적** 자금 상환분담 변동가능

<첨부> 2018년 정기 재계산 결과 보고



